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조달청

2019년 4월 6일(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5(금)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4. 5(금)	담당부서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시장과 조달청 혁신조달과
담당과장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시장과 양광석 과장(044-203-4540)	담 당 자	김수희 사무관(044-203-4543)
	조달청 혁신조달과 안태석 과장(042-724-7305)		전연수 사무관(042-724-7203)

기술개발 성공제품, 공공조달 시장으로!

- 산업부,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 시작 -
- 공공기관이 제안한 기술 개발 성공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
- 공공기관, 녹조 측정, 미세먼지 대응, 노인치매 예방 등 기술개발 요청 -
- 산업부-조달청, R&D와 조달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 **공공기관이 제안한 기술개발에 성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개발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판로 지름길이 열린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공공기관의 수요를 우선 파악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우수조달물품 :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제도(조달사업법)

○ 그간 **우수한 기술개발에 성공해도 판로를 찾지 못해 기술이 사장**되는 현실과, **새로운 사회문제를 혁신적 기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수요**에 착안해 산업부가 금년부터 시작하는 **조달연계형 R&D 사업**('19년 예산 : 19.96억원)이다.

20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 올해 처음 시작되는 본 사업은 7개 과제 선정에 82개 기관이 R&D 개발 수요를 제출하는 등 **11: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여, **혁신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높은 수요와 공공 구매력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려는 민간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올해는 신속한 **산악지형 재난 대응을 위한 드론 개발**(국립공원공단), **노인치매 예방용 VR 컨텐츠 개발**(목포시청),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능형 공조 시스템 구축**(성남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혁신성 평가 지표에 기반**하여 **7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 과제 리스트>

	과 제 명	제안기관	예산 (억원)	예상구매규모 ('21년 기준)
1	신속한 산악지형 재난 대응을 위한 드론 및 전용 스테이션 개발	국립공원공단	8	북한산 2개소 (10억원)
2	가상현실 활용 노인 치매케어 서비스 개발	목포시청	6.8	목포시내 10개소 (10억원)
3	IoT 활용 실시간 녹조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한국수자원공사	5.5	전국 하천 50기 (25억원)
4	스마트밴드 활용 수용자 관제시스템 개발	법무부	7.5	신규 교도소 1개소 (20억원)
5	IoT 활용 실시간 전기 안전관리 체계 개발	한국전기안전공사	4.7	취약지역 1,000기 (7억원)
6	실내 공기질 관리용 지능형 공조시스템 개발	성남도시개발공사	5	성남지하상가 1기 (1억원)
7	장기임대아파트 다기능 복합 환기시스템 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	8	공공건설주택 2만대 (200억원)

○ **경쟁적 대화방식***을 활용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는 기관**이 최종 기술개발 기관으로 선정될 예정이며,

* 입찰업체와의 대화를 통하여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고 해당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낙찰방식

- 오는 **4.5(금)부터 5.8(수)**일 간 **과제 수행 기관 공고**가 진행된다.

○ 향후 2년간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 성능 검증이 완료된 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절차**를 거쳐 **'21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계획이다.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 운영 절차>

기술개발 수요발굴 (공공 수요처) ➡ **R&D 수행** (기업) ➡ **현장형 실증** (공공기관, 기업) ➡ **공공조달** (조달청, 수요처)

□ 산업부와 조달청은 본 사업 시작을 계기로 **공공조달 시장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혁신기술이 **공공조달 시장을 마중물로 하여 초기 시장에 진입토록 지원**하는 데 뜻을 모아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업무 협약 체결 개요 >

○ **일시 및 장소** : '19. 4. 5(금) 14:00 ~ 15: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참석자** : 산업부, 조달청, 공공기관 등
- **(정부)** 산업부, 조달청
- **(공공기관)** 국립공원공단, 목포시청, 법무부, 성남도시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실제 수요자인 공공기관의 수요에 기반해 과제를 기획한 만큼, 기업들은 **기술개발만 잘 하면 조달시장을 활용해 판로를 개척할 수 있어 사업화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 "연구개발 성과가 연구실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장에서 활용**되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역할이 단순 물품 구매를 넘어선 전략적 기능**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산업 혁신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혁신제품의 초기시장 형성이 중요**하다."며,

○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의 공공 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공공시장을 통해 기술사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의 신시장 창출로 효과가 이양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김수희 사무관(☎ 044-203-4543), 조달청 전연수 사무관(044-724-72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9 20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참고 1 **업무협약서**

신기술·제품 개발과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조달청 간 업무협약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은 기술개발과 공공조달의 연계를 통한 기술혁신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초기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기술·제품의 조기 사업화와 이를 통한 신산업 창출·육성을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정책 현안 대응에 필요한 혁신기술·제품 수요를 바탕으로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그 개발 성과를 공공조달로 연계하여 신산업을 창출·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대상 업무범위) 양 부처는 신기술·제품 활용을 위한 수요를 제기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하 "수요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공공수요 발굴을 위한 홍보, 발굴된 수요의 검토 및 선정
2. 공공수요 해결을 위한 수행기업 선정, 경쟁적 기술대화, 현장 모니터링, 개발제품의 성능 검증 및 실증 등 기술개발 과정
3. 개발에 성공한 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정부구매
4. 기술개발 성공 제품에 대한 수요부처·기관의 구매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및 조달 독려
5. 상호 간 사업 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추천 및 활용

제3조(상호 업무지원) 양 부처는 협력대상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최대한 협력하기로 한다.

제4조(정보 교환) 양 부처는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협약의 효력 및 변경)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 협약의 효력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해석 등)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의하고, 그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정함이 없거나 내용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부처의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한 합의에 따른다.

양 부처는 위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04월 05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차	관		조		달		청		장							
정			승			일		정			무			경									

참고 2 과제 선정 기준 [혁신성 평가 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착안사항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①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창출	ㅇ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제품인지 여부** *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②공공구매 필요성	ㅇ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③현안의 시급성	ㅇ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가 많고, 공론화 정도 *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④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ㅇ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시장성	①기대 시장규모	ㅇ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ㅇ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②타 산업 파급성	ㅇ **공공구매 확장성**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ㅇ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혁신성	①제품의 신규성	ㅇ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②제품의 탁월성	ㅇ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 기술혁신의 정도에 따라 혁신기술(revolutionary), 주요 개량기술(major improvement), 보통 개량기술(minor improvement) 으로 구분
	②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ㅇ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보유특허, 과거 R&D 경력 등 ㅇ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